

서울특별시의회
제327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11.

서울특별시의회
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최근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살인 및 각종 피해 등이

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

요구되는 상황입니다.

□ 특히, 공동주택 자가 거주 외에 임차인 등도

동일한 거주자에 해당됨에 따라,

상위법상 임차인 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자

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이 외에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

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을

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
- 이에 안 제2조제2항의 경우,
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등에서 제외된
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후단에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16조의 경우,
해당 조항의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
예방교육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.
- 또한, 안 제18조의 경우,
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하고,
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
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의 경우,
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
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